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의 올바른 판매가 산업현장을 지킵니다!



온라인 판매 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표시'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필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및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인 표시)



안전인증 고시의 안전인증 제품 표시에 관한 사항

1. 형식 또는 모델명
 2. 규격 또는 등급 등
 3. 제조자명
 4.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5. 안전인증 번호
- ※ 위험기계·기구 품목별 개별 기준 참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Ⅲ. 1. (40)
기타재화

1. 품명 및 모델명
2. 법에 의한 인증·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
3. 제조국 또는 원산지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5.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또는 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대상품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시행령 제74조)

기계·기구 (9품목)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방호장치 (9품목)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가설기자재,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보호구 (12품목)	안전모(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 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보안경(차광 및 비산물 위험 방지용),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대상품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시행령 제77조)

기계·기구 (10품목)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등근통, 대패, 루타기, 락스, 모떼기 기계만 해당), 인쇄기
방호장치 (7품목)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롤러기 급정지 장치, 연삭기 덮개, 목재 가공용 등근통 반발 예방 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가설기자재(안전인증 대상 제외)
보호구 (3품목)	안전모(안전인증 대상 제외), 보안경(안전인증 대상 제외), 보안면(안전인증 대상 제외)



미인증·미신고 제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Q1. 미인증 제품을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1항(안전인증) 및 제87조 제1항(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Q2. 미인증 제품에 안전인증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 제2항(안전인증의 표시 등)

Q3. 미신고 제품을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 제1항(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Q4. 미신고 제품에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90조 제2항(자율안전확인인 표시 등)